

##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지방세법 (부분발취)

제112조 (세율)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,000분의 20으로 한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,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.

## 지방세법시행령 (부분발취)

제84조의 3 (사치성재산)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, 골프장, 고급오락장, 고급주택, 고급자동차, 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### 2. 고급주택

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.

- (1)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
- (2)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
- (3)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, 에스카레이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
- (4) 1구의 건물의 연면적 (공유면적을 포함한다) 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